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. 7. 19 선고 2024가단107779 판결 [건물명도 및 임대료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7. 5.

판 결 선 고 2024. 7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[별지 1]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1.2㎡ 전부를 인도하고, 2023. 10. 6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2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임현준

[별지 1]

목 록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
알씨조 및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
지층 101.20㎡
1층 130.17㎡
2층 135.43㎡
3층 128.01㎡
(점유한 부분: 지층 101.20㎡ 전부)

[별지 2]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가.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,

나.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원고와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.

2. 사건 경위에 대하여

가.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1.20㎡ 전부를 2022. 8. 5. 피고와 임차보증금 5,000,000원, 월차임 400,000원, 임대기간 2022. 8. 5.부터 2024. 8. 5.까지 24개월로 정하고 임대하였습니다.

나. 그 후 피고는 2023. 10. 05.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밀린 월차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기일만 지연시켜 원고는 2024. 1. 3. 군포우체국을 통하여 피고에게 연체중인 차임(월세) 지급 독촉과 미 이행시 계약해지예고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고 건물도 명도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 저 본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.

2024. 10. 10. 10:10

